

## 2025년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지원하는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 - 2025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I 사업개요

- **행 사 명** : 2025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 **운영일정** : 2025. 8. 16.(토) ~ 8. 18.(월)
- **운영장소** : 베트남 호치민시
- **지원대상** : 도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 기업 10개사 내외  
※ 2025년 메가어스 박람회 참가기업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2025년 7월 ~ 10월
- **지원내용** : 2025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 참가 지원
  - (사전지원) 해외 진출 사전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 사전 홍보
  - 기업 제품 해외 발송 등 통관 및 물류 지원
  - 해외 바이어 1:1 매칭 상담 지원(기업별 7건, 전문 통역 지원)
  - (사후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및 제품 프로모션 지원
- **모집기간** : 2025년 공고일 ~ 7월 17일(목)

##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도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 기업
    - (필수) 제품 소개자료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우대사항) 수출실적, 해외특허 및 인증 보유 기업
- ※ 2025년 메가어스 박람회 참가기업 우선 지원 예정

###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Ⅲ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지원기업 선정일 ~ 2025년 10월
- 지원내용 : 2025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 참가 지원
  - (사전지원) 해외 진출 사전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 사전 홍보
  - 기업 제품 해외 발송 등 통관 및 물류 지원
  - 해외 바이어 1:1 매칭 상담 지원(기업별 7건, 전문 통역 지원)
  - (사후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및 제품 프로모션 지원

#### < 2025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 >

- (일정) '25. 8. 16.(토) 14:00~18:00
- (장소) 베트남 호치민 푸년지구(WHITE PALACE Hoang Van Thu)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주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상담회 일정표)

8.16.(토)	주요일정	세부내용	비고
14:00~15:00	사전준비	참가기업-통역사 사전 미팅	
15:00~18:00	<b>해외 바이어 1:1 상담</b> [기업별 7건 이상 매칭 지원]		비즈니스 상담(25분) & 휴식 및 정리
18:00	네트워킹	기업-바이어간 자율 네트워킹	기업-바이어 개별

- (현지 프로모션) 베트남 호치민시 Youth Market(청년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이벤트



※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V 신청 및 접수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17일(목)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접수처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https://www.smes.go.kr/sme-expo>)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상담회) 선택 → ④ 2025 베트남 호치민 K-푸드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선택 → ⑤ '참가신청' 선택 → ⑥ 신청서 제출 (기업명.zip 파일) → ⑦ '최종신청 완료' 선택 → ⑧ '사업신청내역' 접수 확인

- 신청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사업팀(063-220-8932)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및 수출성장성 평가표	필수	-
2	■ 참가동의서, 기업정보활용동의서		-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사업자등록증	필수	-
2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기준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3	■ 회사 및 제품소개서		-
4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5	■ 실적자료(수출, 인증 등)	선택	해당자

- 실적자료 가점사항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해당 기준	비고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기업	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 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	각 1점 (최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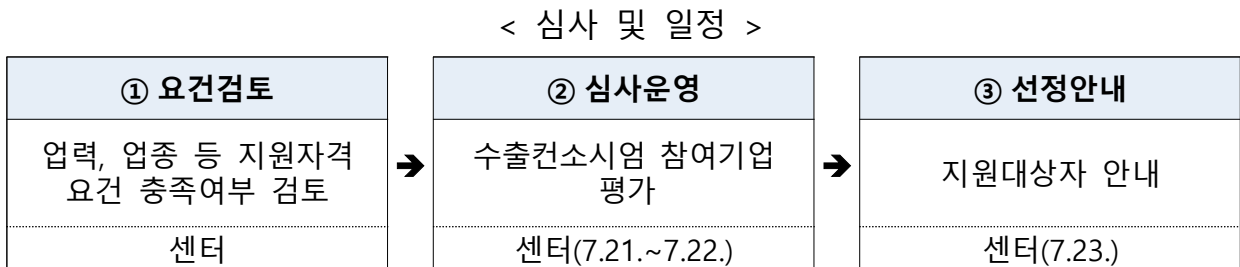
	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유효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1점	

## □ 신청기업 확인사항(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참가비) 납부: 금592,200원(금오십구만이천이백원)  
※ 행사 운영비의 10% 기업부담금 납입 필수
- 해외출장(항공권 및 현지 체류 등) 비용 참가기업 별도 부담

## V 심사 및 추진일정

### □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심사운영) 수출 역량 및 잠재력, 해외마케팅 추진 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성장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③ (선정안내) 지원대상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VI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

**참고****제외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